성주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제 안 자 : 구교강 의원 외 6인

2. 제정이유

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의해 지방의회 소속 공무 원의 임면·교육·훈련·복무·징계 등에 관한 사항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,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..

3. 주요내용

가. 지원의 적용범위(안 제3조)

-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, 정직·직위해제 중인 장애인공무원, 국내·외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은 지원 배제

나. 지원 원칙 및 계획수립(안 제4조)

다.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지원 사항(안 제5조)

- 근로지원인 배정, 보조공학기기 등 지원, 이동편의 시설 보강 등

라.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(안 제8조)

4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 :「지방자치법」,「지방공무원법」

○ 입법예고 : 의견없음(2021. 12. 17. ~ 12. 21.)

5. 검토의견

○ 본 제정조례안은「지방자치법」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성주군의회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,

○ 장애인공무원의 지원 사항, 전문기관의 지정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.

○ 법리 검토결과, 관련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합당하며,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을 위해 본 조례를 제정·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